

2015년 제7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(총괄)

□ 제1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08. 25.(화)	심의내용	건축, 교통심의
안 건 명	간석동 범양아파트 재건축사업		
신청위치	남동구 간석동 616-6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조건부 동의, 교통분야: 조건부 동의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동의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지하수위 전이보 재검토
- 105동 필로티 측벽 안쪽으로 이동
- 주민공동시설 무창 또는 창이 적은 공간에 대하여 채광, 환기창 설치
- 지하주차장 지하1 ~ 지하2층 채광, 환기 오픈구간 설치
- 지하2층 주차장 101동 부분 동선 원활 확보

《교통분야》

- 어린이놀이터 남측 보행공간 계획바람
-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차량회차 등을 고려하여 개선, 비가림시설 등 시설확보바람
- 지하1,2층 램프옆에 연석 등을 설치하여 올라가는 부분에 교통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
- 사업용 시설인 주거시설에 임산부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향후 주민간 다툼의 소지 및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2호 안건

심의일자	2015. 08. 25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
신청위치	남구 주안동 1577번지 일원		
심의결과	건축 분야: 조건부 동의		
<p>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【조건부 동의 내용】</p> <p>《건축분야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바람과 대피공간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관서와 협의바람 ○ 콘크리트 강도는 24Mpa 이상을 적용바람 ○ 저층부(부대시설)부분이 너무 단조로우니 입면을 재검토바람 ○ 지하 주차장 B2에서 B3 내려가는 램프를 연장하여 안전운전이 가능하게 조치바람.(Y20, X17) ○ 주민공동시설의 실들이 맞통풍이 가능하게 요함. ○ 임대 APT부분 계획 다시 검토필요.(다른동과 같은 주동형태) ○ 배치계획 레벨을 이용한 계획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주동 배치계획시 외부에서의 경관검토(주동길이 다양화 검토) ○ 조건보완 이후 확인이 필요함.(이윤정의원) <p>《공통사항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 여부를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			